

행정자치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업소 과징금 미부과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사천시

내 용

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[별표 23]에 따르면, 허가관청은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법 제4조 제7호의 ‘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·가공·소분한 식품등을 판매’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‘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’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식품위생법」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, 법 제4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‘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’ 및 ‘영업등록의 취소’ 명령을 받은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한편 사천시 ○○○○과는 4대악(불량식품) 근절²¹⁷⁾과 관련, 사법기관(○○경찰서)와 합동점검(2013. 4. 18.~4. 25.)을 실시하여 관내 유통전문판매업소인 ○○○○(대표 ○○○, 사천시 ○동 소재)이 「식품위생법」 제4조 제7호 위반으로 ‘식품제조가공업 을 득하지 않은 자²¹⁸⁾가 만든 식품(○○○간장)을 제공받아 판매’한 행위를 적발(2013. 4. 19.)하였고,

○○경찰서는 위 「식품위생법」 을 위반한 해당 업소의 영업자를 형사 입

217) 경상남도 ○○○○과-0000호(2013. 0. 00.)

218) (주)○○○○○(대표 ○○○, 경북 ○○시 ○○동 소재)

건 한 후 그 사실을 사천시 보건위생과에 통보(○○과-0000호, 2013. 0. 0.) 하였다.

따라서 사천시 ○○○○과는 ○○경찰서가 범죄 입건 사실을 통보한 관내 유통전문판매업소인 ○○○○의 「식품위생법」 제4조 제7호 위반행위에 대해 ‘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’의 행정처분과 동 업소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제공 받아 판매한 식품(○○○간장)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약 1,788,000원²¹⁹⁾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도 사천시 보건위생과는 아래 【표】와 같이 동 업소의 위반 사실에 대해 ‘영업정지 2개월²²⁰⁾’의 행정처분(○○○○과-00000호, 2014. 0. 0.)만 하고 위해식품 등 판매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.

【표】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

업소명 (영업종류)	소재지	대표자	위반사항	처분내역	비고
○○○○ (유통전문판매업)	경남 ○○시 ○○○○길 00-00	○○○	식품위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[별표23] 행정처분 기준 II. 개별기준 1.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호 사목	영업정지 2개월 (‘14.5.15.~ 7.13.)	사전통지 (‘13.5.7.)
					행정처분 유보 ²²¹⁾ (‘13.5.22.)
					행정처분 ²²²⁾ (‘14.5.7.)

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

앞으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219) 2012.2.경부터 2013.12.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.8ℓ×100병=1,300,000원, 0.9ℓ×61병= 488,000원 상당 판매

220) ○○경찰서에서 압수한 ○○○간장 1.8ℓ×20병, 0.9ℓ×11병, 0.18ℓ(증정용)×77병은 자체 폐기

221) 형사사건 종결 시 까지 행정처분 유보 요청(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서, ○○○○)

222) 형사사건 확정(벌금 70만원, ○○지검 ○○지청, 2014.0.0.)